NACF 보고서11 - 58 능협중앙회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탁업자명 : 농협중앙회

문의가능 전화번호 : (02)2080-3717, 3718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가.집합투자기구 명칭 :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주식)

나.분류 : 증권집합투자기구(증권투자(고성장추구형), 일반형, 개방형, 추가형)

다.보관·관리기간 : 2010-04-25 ~ 2011-04-24

라.집합투자업자 : 신영자산운용(주)

마.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하나대투증권, 메리츠종합금융, 엘아이지증권, 산업은행(판매/고객지원

실), 대한생명, 교보생명보험(판매), 우리증권, 하나IB증권, 유화증권, 골든브릿지증권, 동부증권, 바로투자증권, 농협(위탁판매), 삼성화재(위탁판매), 삼성생명보험(위탁판매), 교보증권, 한화증권, 하이투자증권 (구 디투자증권), 토러스투자증권, 하나은행(판매), 경남은행(판매), 동양오리온투신증권, 외환은행(판매), 한투증권(구동원증권), 한맥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흥국증권중개, 삼성생명보험, HMC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리딩투자증권, 아이비케이투자증권(IBK증권), 기업은행(판매), 미래에셋생명보험,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구굿모닝증권), 현대증권, NH투자증권(엔에치이), 푸르덴셜투자증권, 제주은행(판매), 금호종합금융(다올), 교보생명보험, 기타, 동양종합금융증권, SK증권, 대신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닷컴증권, 금호종합금융, 현대해상화재보험(판매), 농협(판매), 대우증권, 솔로몬투자증권, 애플투자증권, 우리은행(판매), 홍콩상하이은행(판매), 대한생명보험(위탁판매), 케이비투자증권(구한누리)

2.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наот	нало	주:	요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2010-05-03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반영; 이익 금이 0보다 적을 경우 분배 유보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8.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5.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8.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5.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 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삭 제>
2010-05-03	장내파생상품 투자한도, 투자제한 등 자본시장법 에 적법하도록 기재 정 정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5.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③제19조제2호본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NACF 보고서11 - 58 능협중앙회

••	エホハロ	30		080
	2010-05-03	판매회사 보수인하	제33조(이익분배) ① 분배한다. 제39조(보수)① 4.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 무관리회사보수	제33조(이익분배) ① 분배한다. 다만,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윱한다. 제39조(보수)① 4.<삭 제>
	2010-05-03	판매회사 보수 인하 및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 270조 개정(2009.12.21) 사항 반영	(e형)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2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⑨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	제39조(보수)③ (A형) 2.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0.0 (e형) 2.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9.8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⑨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2011-01-17	l형 종류 수익증권 매입 자격 변경	:1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에 한하 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 익증권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4. <신 설> 제39조(보수)③ <신 설> (1형) 제39조(판매수수료)② 4. <신 설>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①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③ 4.신영마라톤 증권 투자신탁(주식) I형: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4. 신영마라톤 증권 투자신탁(주식) I형 제39조(보수)③ (I형)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1000분의4.62.판매회사보수율:연1000분의0.33.신탁업자보수율:연1000분의0.33.신탁업자보수율:연1000분의0.3제39조(판매수수료)② 4. I형: 선취판매수수료 없음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① 3.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011-03-15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 수율 신설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 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 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 한 금액으로 한다. (A형)	제39조(보수)① 4.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A형) 3.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25 4.일반사무수탁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5
	2011-03-15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 수율 신설	(e형)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l형)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제39조 (보수) (W형)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4.일반사무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e형)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4.일반사무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I형)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4.일반사무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변경일자	변경사유	성명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협회등록번호
2010-10-06	신규	정성한	신영자산운용	2109001102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해당사항없음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해당사항없음

NACF 보고서11 - 58 능협중앙회

6. 회계감사인의 선임·교체·해임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 11
선임일자	회계감사인명	계약기간	감사보수	계약방법
2008-04-01	신한회계법인(B)	1년(자동연장)	4,796,000	서면계약

⁻ 상기 감사보수는 "미지급감사보수"로 실제 지급금액은 변동될 수 있고, 회계감사 종료 이후 지급될 예정임

7.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확인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부합함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적정함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적정함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공정함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 : 적정함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해당사항없음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_	
	- 신영자산운용(주) 의 준법감시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의거 집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이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또는 해당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종료(결산) 에 따라 작성 제공됩니다.

합투자재산별 자산배분내역의 적정성과 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